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 외 10명
- 의안번호 : 제977호
- 발의일자 : 2023년 8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2. 제 안 이 유

-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시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다. 반려문화 정착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반려동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정착·확산시키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안 제3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기본계획(안 제6조), 반려문화 정착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안 제9조), 반려동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이하 “동물보호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기존의 동물보호조례와 유사성이 많아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조례에서는 보호해야 할 동물의 대상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 동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려동물이 포함된 동물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조례 중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 세부적으로 안 제2조(정의)는 ‘소유자등’, ‘유실·유기동물’, ‘반려동물’이 현행 조례와 중복되고 있으며, ‘반려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학대’를 전체 동물 중 반려동물에만 적용한 것으로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학대의 범위와 동물의 구조·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축소

하여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는 현행 동물보호조례 제28조(동물 보호 등의 원칙)와 유사하며, 안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도 현행 조례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를 반려동물의 구조·보호로 국한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반려동물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히 별도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현행 동물보호조례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과 별개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계획에 반려동물 관련 계획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계획을 중복하여 시행하기보다 필요하다면 현행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안 제9조(반려문화 조성 지원)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2호 반려동물 놀이터, 제4호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조례 제26조와 제27조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반려동물보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로 관련 내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붙임1]

□ 본 조례안과 동물보호조례 주요내용 비교

○ 조례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9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유실·유기 반려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반려동물을 말한다.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규정(안 제3조)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
| <p>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적절한 방법에 따라 사육·관리하여야 한다.</p> | <p>제28조(동물보호 등의 원칙) ①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원 동물의 경우 야생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람·공연 등을 위하여 동 |

| | |
|--|--|
| | <p>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동물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할 것</p> <p>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p> <p>3. 관람·공연 등에 필요한 동물의 교육은 생명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공연 및 이를 위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p> <p>4.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 6조), 반려동물 실태조사 실시하고, 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에 반영(안 제7조)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
| <p>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반려동물의 구조·치료 및 | <p>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p>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학대 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5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안 제8조)

| | |
|--|---|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시장은 유실·유기 반려동물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반려동물(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학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적절한 치료 |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

| | |
|--|--|
| <p>·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정한다)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치료·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p>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p> |
|--|--|

○ 반려문화 정착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 |
|---|--|
| <p>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p> <p>제9조(반려문화 조성 지원) ① 시장은 반려문화 정착·확산과 공공시설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 <p>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p> <p>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
|---|--|

1. 반려동물 문화센터

2. 반려동물 놀이터

3. 반려동물 일시쉼터

4. 반려동물 장묘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부과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반려문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46조에 따른 처리

3.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8.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9. 재난 발생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

10.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긴급보호동물의 인수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시로 인계한 경우에 한한다.

④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홍보 및 운영 자문을 위해 비상임으로 명예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 센터장이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또는 자문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 반려동물의 날 지정(안 제10조)

| | |
|--|---|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 <p>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p> | <p>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 ①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p> |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반려동물 보험의 가입(안 제11조)

| | |
|--|--|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 <p>제11조(반려동물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반려동물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p> | <p>제4조(보험계약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p> |